

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

본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(계약의 체결), 동법 시행령 제98조(계약의 체결), 금융투자업규정 제4-73조(서면자료 기재사항) 등에 의거, 투자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면자료입니다.

투자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본 서면자료에 나타난 계약관련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일임계약 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보다 상세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본 서면자료와 함께 첨부된 투자일임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정하는 서면자료를 교부 받고 주요부분에 대하여 설명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계약일 : _____

수령인 : _____ (인)

(주)매트릭스투자자문

1. 회사개요

- 대표이사 : 곽상준
- 주요사업 :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
- 자본금 : 24억
- 최대주주 : 곽상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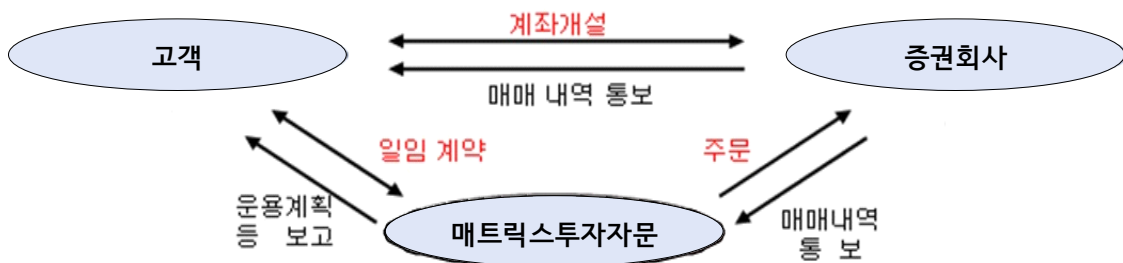
2. 금융위원회 등록번호 : 금융위원회 시행 자산운용과-1067

3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

- 투자일임의 범위 : 국내외 경제분석 및 증권 가치분석을 바탕으로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할 금융투자상품의 종류, 종목,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일임업무 그리고 증권의 매매구분,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업무 일체.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,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운용에 반영해야 함.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자본시장법)에 규정된 투자일임업의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하여 결정
- 투자대상 : 자본시장법 제4조에 의한 증권 등의 범위 또는 동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, 증권 및 운용조건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협의 한 것
- 자산배분
 - 1)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(단,파생ETF제외) : 0 ~ 100%
 - 2) 해외주식, 미국 주요 거래시장과 중국 주요 거래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ETF : 0 ~ 100%
 - 3) RP 및 예수금 등 현금성자산 : 0 ~ 100%
- 투자위험 : 2009.02.04.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본 상품의 투자위험 등급은 "1등급(가장높은위험)으로 총(6)단계 중 (1)번째 높음" 따라서 투자자성향이 공격투자 형이상인 고객에게 적합.

4.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

- 업무수행 기준 :



5. 투자권유전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현황 : 별지 1 참조

- 당사 투자권유전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과거 내부자거래, 시세조종, 임의매매 등 관련 법률상의 위법행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

6.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: 별지 2 참조

7. 투자자와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절차

- 투자일임 담당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
-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 통보
-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대상 유가증권과 동일한 유가증권을 자기계산으로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, 실적 및 잔액을 투자자에게 통보
-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규정으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여 규정을 준수하며, 주기적 점검보고서 작성

8. 고객과 회사의 의무 및 책임

(1) 회사의 의무 및 책임

- **고객 성향 등 사전파악** :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고객의 투자목적, 투자경험, 위험선호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.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 요구에 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운용
- **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** : 회사가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. 다만, 투자일임담당자가 법령이나 사규를 위반하여 운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한 후 통보할 수 있음
- **비밀유지 의무** :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의 내용과 관리상황, 손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제3자에게 비밀을 유지해야 함
- **불건전 영업행위 금지** :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

- ① 고객으로부터 금전 및 증권, 그 밖의 재산의 보관 및 위탁을 받는 행위
- ② 고객에게 금전 및 증권,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
- ③ 고객에게 제삼자의 금전 및 증권,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,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
- ④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
- ⑤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

○ **투자일임재산 운용 행위제한** : 투자자문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. 단, 고객과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법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

- 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
- ② 투자자문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
- ③ 투자자문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할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
- ④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투자자문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⑤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,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
- ⑥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자문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
- ⑦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자문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- ⑧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. 다만,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,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 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
- ⑨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 받는 행위
 - 가)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,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
 - 나)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
 - 다)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,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단,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,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, 유상증자의 청약은 허용

○ **통지의무 및 통지사항**

- ① 고객의 거래증권회사와 점포 및 계좌번호, 우편물 기타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유선, 서면, 우편,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
- ②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고객이 상기 내용에 변경이 있음에도 4회(계약한 연도에는 3회)이상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가능

- **투자일임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사항** : 고객은 투자일임서비스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투자자문사에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,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

9. 수수료에 관한 사항

- 투자일임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됨.
 - ① 기본수수료: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
 - ② 성과보수(수수료):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 초과분에 대하여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
- 투자일임수수료는 고객과 정한 "투자일임수수료에 대한 약정서"에 따라 산정함.

10.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: 투자일임계약을 체결, 만료 또는 해지 하는 경우 각 시점의 투자일임재산 형태는 현금과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함

11. 투자일임재산의 평가 및 투자실적 평가

- **투자일임계약 체결 시점의 투자일임재산의 평가** :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현금 외 금융투자상품 또는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 당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투자일임재산을 평가
- **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점의 투자실적의 평가** : 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을 기준으로 평가하되,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 전 영업일의 종가로 평가하며, 주식에 있어 배당,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배당락가격,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하여 계산

12. 투자결과 통보 방법

- 투자결과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재산의 투자결과를 직접 또는 우편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. 단, 고객이 사전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것으로 하며, 투자결과의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①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
 - ②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, 매매가격, 매매회전율 등 운용현황
 - ③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, 취득가액, 시가 및 평가손익
 - ④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
 - ⑤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13. 투자권유의 업무 위수탁

- 수탁회사와의 투자권유 업무위수탁계약에 따라 본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투자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수탁한 회사에게 지불 가능

14. 위험 및 유의사항

-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투자일임 매매거래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투자일임 계약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익도 보장하지 않음
-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으며,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되어 주가상승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주가하락 시에는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
- 고객 요청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(일부출금)시 보유자산을 시장가격에 매도함에 따라 매매차익 또는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
-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
- 성과수수료가 있는 계약의 경우 성과수수료가 없는 계약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.
- 본 투자일임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. 따라서 고객은 투자 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면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함.

투자권유전문인력 및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

(주)매트릭스투자자문

직책	성명	주요경력	비고
대표이사	곽상준	매트릭스투자자문 대표이사 신한투자증권 지점장	
운용책임력	최현수	매트릭스투자자문 운용역	
운용책임력	이윤희	매트릭스투자자문 운용역	
운용책임력	김가은	매트릭스투자자문 운용역	

회사 주요주주 현황

<대주주현황>

주주명	최대주주와의 관계	보통주		우선주		합 계	
		수량	비율	수량	비율	수량	비율
곽상준	최대주주	65,476	21.36%			65,476	21.36%
최경미	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	2,912	0.95%			2,912	0.95%
(주)우산과소금	주요주주	41,667	13.6%			41,667	13.6%
권순장	주요주주	17,857	5.83%			17,857	5.83%

<임원현황>

성 명	직 위	담당업무	비고
곽상준	대표이사	CIO	
한선욱	비상임이사		
황인선	상임이사	경영지원	
권순장	감사	감사	

징계내역 열람제도 이용안내

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위규행위와 관련하여 부과받은 과거의 징계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좌관리 직원의 적합성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“징계내역 열람제도”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- 다 음 -

□ 열람신청인 및 열람대상자

- 금융투자회사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고객은 자신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“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” 또는 “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직원”의 과거 징계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□ 열람신청절차

- 계약시 상담직원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□ 징계내역 통보

- 징계내역은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보되며,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.
-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내역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3~6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□ 통보대상 징계내역 및 통보내용

- 금융관계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“견책”이상의 징계내역 및 위법.부당행위의 내용

□ 통보대상 제외

- 견책이상의 징계라 하더라도 해당 징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- ▶ 위법.부당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감독소홀.단순추종 등으로 부과된 징계
 - ▶ 감독당국이 사면 등의 취지에 따라 통보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
 - ▶ 징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
 - ☞ 징계면직 : 10년, 정직 : 5년, 감봉 및 견책 : 3년